

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4. 7. 2.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이유

동기능 전환의 안정적 정착·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한시기구에 대하여 행정자치부가 그 존속기한을 연장 승인함에 따라 우리구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

2. 주요골자

-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1년간 연장
 - ▷ 2004. 6. 30 ⇒ 2005. 6. 30 (안 부칙 조례 제494호 제2조제1항)

3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
-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시군구 한시기구 처리지침 통보
 - ▷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- 1425(2004. 6. 29)호
 - ▷ 부산광역시 기획관실 - 4345(2004. 6. 29)호

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494호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 제1항중
“2004년 6월 30일까지” 를 “2005년 6월 30일까지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